

[별표 2]

종합병원 세부평가방법(제3조제3항 관련)

1. 평가영역별 · 평가지표별 가중치

가. 평가영역별 가중치

평가영역	가중치
환자안전	37%
의료질	18%
공공성	20%
전달체계 및 지원활동	11%
교육수련	8%
연구개발	6%
합 계	100%

나. 평가지표별 가중치

1) 환자안전 영역

평가지표	가중치
▶ 의료기관 인증	상
▶ 입원환자당 의사수	
▶ 입원환자당 경력 반영 간호사수	
▶ 중환자실	
▶ 신생아중환자실	중
▶ 환자안전관리체계 운영	
▶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	
▶ 항생제 처방률	
▶ 음압공조 격리병상 설치	
▶ 감염관리체계 운영	
▶ 환자안전보고학습체계	하
▶ 결핵 검사 실시율	
▶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	
▶ 입원전담전문의 운영	

2) 의료질 영역

평가지표	가중치
▶ 폐렴	중
▶ 관상동맥우회술	
▶ 급성기뇌졸중	
▶ 혈액투석	
▶ 만성폐쇄성폐질환	
▶ 천식	
▶ 마취	
▶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	하
▶ 환자경험 (시범지표)	없음

3) 공공성 영역

평가지표	가중치
▶ 분만환자 관리	상
▶ 응급의료의 적정성	
▶ 중환자실 운영 비율	중
▶ 중증도 보정 평균재원일수	
▶ 간호·간병통합서비스 참여	
▶ 소아질환환자 관리	
▶ 희귀난치질환 구성비	
▶ 의료급여 환자 비율	
▶ 외상환자 관리 (시범지표)	없음
▶ 정신의료 (시범지표)	

4)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

평가지표	가중치
▶ 입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	상
▶ 외래 경증질환 비율	
▶ 진료협력체계 운영	
▶ 외래환자 대비 입원환자 비	중
▶ 입원 시 상병(POA, Present on admission) 보고체계 운영	
▶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 참여	하
▶ 항생제내성 감시체계 참여 여부	
▶ 전자의무기록시스템(EMR, Electronic Medical Record) 인증	
▶ 뇌사추정자 신고 수 (시범지표)	없음

5) 교육수련 영역

평가지표	가중치
▶ 전공의 확보율	상
▶ 전공의 수 대비 적정 지도전문의 확보	
▶ 지도전문의 수 대비 적정 진료실적	
▶ 수련환경 모니터링	
▶ 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	중
▶ 전공의 학술활동 지원규정	
▶ 전공의 의견 및 건의사항 처리규정	
▶ 전공의 수련 및 포상규정	하
▶ 전공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이행	없음

6) 연구개발 영역

평가지표	가중치
▶ 의사당 임상시험심사위원회(IRB, Institutional Review Board) 주관 연구책임자 수	상
▶ 의사당 지식재산권 수	
▶ 임상연구시설 운영	중
▶ 연구비 지출 여부	

2. 평가지표별 값 표준화

$$Y=(X-X_{\min})/(X_{\max}-X_{\min})$$

Y : 표준화 값 X : 원 값(지표별 결과를 수치화 한 값, 소수점 2자리까지 산출)

3. 평가방법

가. 평가지표별 표준화 값에 가중치를 곱하여 점수를 구한다.

나. 환자안전, 의료질, 공공성,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은 지표별 점수를 더하여 영역별 점수를 산출(소수점 2자리까지)하고 영역별 점수를 더하여 평가 점수를 구한다. 교육수련 영역, 연구개발 영역은 각 영역의 지표별 점수를 더하여 영역별 점수(소수점 2자리까지) 및 평가점수를 각각 구한다.

- 다. 평가점수가 높은 의료기관을 우수한 의료기관으로 한다.
- 라. 환자안전, 의료질, 공공성,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의 평가점수가 동점이 나온 경우 환자안전과 의료질, 공공성,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의료기관을 우수한 의료기관으로 한다.
- 마. 교육수련 영역의 평가점수가 동점이 나온 경우 전공의 수 대비 적정 지도 전문의 확보, 지도전문의 수 대비 적정 진료실적, 전공의 확보율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의료기관을 우수한 의료기관으로 한다.
- 바. 연구개발 영역의 평가점수가 동점이 나온 경우 의사당 지식재산권 수, 의사당 임상시험심사위원회(IRB, Institutional Review Board) 주관 연구책임자 수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의료기관을 우수한 의료기관으로 한다.
- 사. 설립취지 등 해당기관의 특수성으로 지표값을 생성하지 못하는 경우 의료 질평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.
- 아. 그 밖에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기여도 등이 인정되는 경우 평가점수에 별도 가산할 수 있다.

4. 등급화

가. 평가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
평가영역	근거	등급		
환자안전	평가점수	1등급	가	98.0퍼센타일 이상
			나	90.0퍼센타일 이상 ~ 98.0퍼센타일 미만
의료질		2등급		80.0퍼센타일 이상 ~ 90.0퍼센타일 미만
공공성		3등급		70.0퍼센타일 이상 ~ 80.0퍼센타일 미만
전달체계 및 지원활동		4등급		50.0퍼센타일 이상 ~ 70.0퍼센타일 미만
		5등급		50.0퍼센타일 미만
교육수련	평가점수	1등급		80.0퍼센타일 이상
		2등급		50.0퍼센타일 이상 ~ 80.0퍼센타일 미만
		3등급		50.0퍼센타일 미만
연구개발	평가점수	1등급		80.0퍼센타일 이상
		2등급		50.0퍼센타일 이상 ~ 80.0퍼센타일 미만
		3등급		50.0퍼센타일 미만

나. 「의료법 제3조의5」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병원의 경우, 환자안전, 의료질, 공공성,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별 평가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
평가영역	근거	등급	
환자안전	평가점수	가등급	95.0퍼센타일 이상
의료질		나등급	80.0퍼센타일 이상 ~ 95.0퍼센타일 미만
공공성		다등급	60.0퍼센타일 이상 ~ 80.0퍼센타일 미만
전달체계 및 지원활동		라등급	60.0퍼센타일 미만

다.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영역별로 다음의 경우에는 등급에서 제외한다.

- 1) 환자안전, 의료질, 공공성,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 : 환자안전과 의료질 영역의 산출된 지표수의 합이 50% 미만인 경우
- 2) 교육수련 영역 : 평가 당해연도 수련병원 미지정 병원, 평가점수 값이 없는 경우 및 전공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미이행으로 평가된 경우
- 3) 연구개발 영역 : 평가점수 값이 없는 경우

라. 의료기관이 평가대상기간(진료실적에 대한 평가기간)에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98조 및 제99조 또는 「의료법」 제64조 및 제6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위반사항으로 업무정지(과징금 대체 포함)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환자안전, 의료질, 공공성,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의 평가점수에 따른 등급을 1등급 하락한다.

근거 법령	위반사항
국민건강보험법	거짓청구 (「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」(보건복지부 고시) 제3조에서 정한 거짓청구)
	미근무,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
의료법	무자격자의 의료행위, 의료인의 면허사항 이외 의료행위
	거짓, 과장 등의 의료광고
	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의 지도와 명령 거부 및 불이행

※ 다만, 행정처분 절차 또는 재송이 진행 중인 경우, 처분이 최종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

5. 의료질 향상 노력 기관

환자안전, 의료질, 공공성,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의 4등급 또는 5등급(전문병원의 경우 다등급 또는 라등급) 의료기관 중 전년도 등급과 동일하나 평가점수가 전년도와 비교하여 15% 이상 상승한 경우 '의료질 향상 노력 기관'으로 한다.